

韓美自由貿易協定과 韓國經濟⁽¹⁾

宋 泳 官

지난 6월 30일에 최종 타결된 韓美自由貿易協商에서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과 자동차 시장의 개방 폭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분야 외에 미국은 한국의 의약품·통신·방송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韓美自由貿易協定으로 인해 미국시장이라는 거대한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당면과제였고, 세부 분야로서 자동차 관련 제품과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미국 진출 확대, 무역구제, 개성공단 문제, 전문직 비자 쿼터의 확보를 포함한 인력이동의 자유화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협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전반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상은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맞춘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韓美自由貿易協定の 체결은 韓國經濟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이 기회는 실현은 기업의 숙제로 남아 있다.

1. 序 論

2007년 6월 30일 양국 통상장관이 최종 협정문에 서명을 함으로써, 2006년 2월 3일에 공식 출범을 선언한 韓美自由貿易協商이 막을 내렸다. 韓美自由貿易協商은 8차례의 公式協商 및 高位級協商을 거쳐 2007년 4월 2일에 타결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2007년 6월 16일 美議會와 行政府 간에 합의된 ‘新通商政策’ 관련 문안을 한국에 제안함에 따라 2007년 6월 말 추가협의를 거쳐 韓美自由貿易協商은 지난 6월 30일에 최종 타결되었다.

韓美自由貿易協商은 그 중요성에 비해 준비도 부족하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진행된 비민주적인 협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韓國政府는 公聽會 개최 등 韓美自由貿易協商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韓美自由貿易協商이 준비없이 진행되었다는 비판은 그 근거가 약해 보인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주요 貿易對象國이었다. 이로 인해 한미 간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兩國間 通商懸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

(1)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공개강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 특히 한미 양국은 2001년 이후부터 ‘分期別 通商懸案點檢會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따라서 한미 양국 정부는 韓美自由貿易協商 개시 이전부터 양국의 통상현안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의 경우 한국에 대해 가장 관심이 큰 通商懸案은 스크린쿼터 문제, 그리고 自動車市場과 쇠고기를 비롯한 農産物 市場의 개방 확대였다. 또한 미국은 韓國 醫藥品·通信·放送 市場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²⁾ 한국의 경우 韓國經濟에 韓美自由貿易協定 締結 그 자체가 주는 상징적 무게를 고려해 볼 때, 주된 관심사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그 자체에 있었다고 하여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産業에서는 製造業, 특히 自動車와 섬유산업은 韓美自由貿易協定의 대표적 수혜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貿易救濟, 개성공단 문제, 전문직 비자 쿼터의 확보를 포함한 人力移動의 자유화는 한국이 한미자유무역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구한 분야였다.

이 글에서는 韓美自由貿易協定의 주요내용을 産業別로 살펴보고 이 협정이 韓國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한다. 우선 제2장과 4장에 걸쳐 農水産業, 製造業, 서비스업 각각에 대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협상결과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제5장에서 韓美自由貿易協商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며 이 글을 마감한다.

2. 農水産業

2.1. 主要 妥結內容

韓美自由貿易協商 農業分課의 협상 대상 품목 수는 모두 1,531개이지만, 이 중 민감성이 높은 품목이 그리 많지는 않다. 민감 품목으로는 畜産物 가운데 쇠고기와 돼지고기, 그리고 낙농품을 들 수 있다. 穀物類 중에서는 大豆와 감자, 그리고 보리, 과일류 가운데는 오렌지, 사과, 포도 등을 민감 품목으로 볼 수 있다. 채소류 가운데 고추, 마늘, 양파 등이 민감 품목이며, 그밖에 천연꿀과 인삼 등이 韓美自由貿易協商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졌던 품목이다. 이들 민감 품목의 시장개방은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關稅撤廢, 관세철폐 이외의 關稅割當制(TRQ: Tariff Rate Quota),⁽³⁾ 農産物緊急輸入制限措置(ASG: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⁴⁾ 季節關

(2) 협상 전 미국과 한국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Schott *et al.*(2006) 참조.

(3) 관세할당제는 일정한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설정하고 그 수입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높은 관세를 설정하여 일정량 이상의 수입증가를 억제하는 제도임.

稅⁽⁵⁾ 도입 등 용도별로 차별화된 개방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타결하였다.

畜産物 중 쇠고기의 경우 냉장 및 냉동 쇠고기 등 민감한 6개 품목에 대해 현행 40%의 關稅를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고, 輸入 增加로 인한 피해를 最小化하기 위해 同期間 중 ASG를 적용하기로 하였다.⁽⁶⁾ ASG 발동기준 물량은 이행 1년차 27만 톤에서 매년 6천 톤씩 증량하여 15년차에는 35만 4천 톤이 되게 된다. 또 ASG 발동 수준은 5년차까지는 實行稅率인 40%까지 인상하며, 6~10년차까지는 실행세율의 75% 수준인 30%까지 인상, 11~15년차까지는 실행세율의 60% 수준인 24%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⁷⁾

돼지고기의 경우 냉장육에 대해서는 關稅撤廢 期間을 이행 후 10년으로 하였고, 同期間 동안 ASG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냉동 돼지고기는 ASG 발동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關稅도 2014년 1월 1일까지 철폐하기로 결정하였다. 낙농품 중 탈지·전지분유는 現行關稅인 176%를 유지하기로 한 대신 無關稅쿼터 5천 톤을 매년 3%씩 증량하기로 하였고, 현행 관세가 36%인 치즈의 경우 체다치즈는 10년 동안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그 외의 치즈는 15년에 걸친 관세철폐와 더불어, 7천 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3%씩 增量하는 無關稅쿼터를 14년 동안 제공하기로 하였다.

穀物類의 경우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은 關稅亮許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곡물류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진 품목은 大豆였다. 대두는 크게 사료용 및 장류제조용으로 사용되는 加工用 大豆와 家庭용으로 사용되는 食用 大豆로 구분된다.⁽⁸⁾ 가공용 대두는 關稅를 즉시 撤廢하기로 하였고, 가정용 대두는 現行 關稅인 487%를 유지하되 無關稅쿼터를 이행 초기 연도에 2만 5천 톤을 제공하고 매년 3%씩 증량하기로 합의하였다. 감자의 경우 감자 칩 등에 사용되는 加工用 감자는 季節關稅를 적용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국내산과 代替關係가 큰 食用 감자는 現行 關稅를 유지하되 無關稅쿼터를 3천 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3%씩 증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보리, 맥주맥, 맥아 등의 關稅撤廢 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수입급증 시 완충장치로

-
- (4) 한미FTA에서는 수입물량이 발동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ASG를 도입함.
 - (5) 농산물 등과 같이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에 대해 계절구분에 따라 수입물품에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관세를 할증 또는 할인하여 부과하는 제도임.
 - (6) ASG 적용 대상 품목은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0201-10-0000부터 0202-30-0000까지 6개 세번임.
 - (7) 한미FTA에서 ASG 적용 품목 및 방식에 대해서는 한미FTA협정문 부속서(3-가) 참조.
 - (8)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두는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공용 대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ASG를 도입하였으며, 소량의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과일류의 경우 오렌지와 포도 등은 收穫期와 非收穫期로 구분하여 개방의 정도를 달리 하였다. 오렌지의 경우 한국의 收穫期 기간인 9월에서 2월까지의 現行 關稅인 50%를 유지하되, 2천 5백 톤의 TRQ를 제공하고 매년 3%씩 증량하기로 하고, 非收穫期에는 관세를 30%에서 시작하여 7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다. 포도의 경우도 收穫期인 5월부터 10월 15일까지는 現行 관세인 45%를 17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고, 非收穫期에는 관세를 24%에서 시작하여 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다. 식물검역 관제로 輸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과와 감의 경우 국내 수요가 많은 후지품종은 45%의 現行 關稅를 20년에 걸쳐 철폐하되, 23년 동안 ASG 適用對象으로 하였고, 기타 품종은 45%의 現行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10년 동안 ASG 適用對象으로 하였다.

그 외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등 중요한 채소의 關稅撤廢 期間은 15년으로 결정되었고, 이들 품목에 대해 18년 동안 ASG를 적용하기로 하였다.⁽⁹⁾ 천연꿀은 現行 關稅인 243%를 유지하되 이행 첫 해에 無關稅TRQ 200톤을 제공하고, 이 無關稅TRQ량을 매년 3%씩 증량하기로 하였다. 인삼은 핵심 7개 품목⁽¹⁰⁾의 關稅撤廢 期間을 18년으로 하였으며, 20년간 ASG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水産物의 경우 민감 품목인 명태의 경우 現行 관세인 30%를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고, 민어의 경우 現行 관세인 63%를 12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2.2. 評價

農産物의 경우 극히 일부 품목의 關稅撤廢 例外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따라서 韓美自由貿易協定은 칠레, 아세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自由貿易協定에 비해 農産物의 開放 폭이 크다. 그러나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 關稅撤廢期間을 최대 20년까지 장기간으로 설정하여 競爭力 提高 및 구조조정 기간을 확보하였다는 점, 그리고 사과, 고추, 마늘, 보리,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참깨, 땅콩 등에 ASG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오렌지, 포도에 대해서는 季節關稅를 도입하여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비한 충격 흡수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가장 우려가 큰 畜産物의 경우 關稅가 장기적으로 撤廢됨에 따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 國內 價格下落은 불가피해 보인다. 쇠고기의 경우 쇠고기 輸入이 가장 많았던 2003년 전체 수입량은 29만 4천 톤이었으며, 이 중 美國産이 20만

(9) 現行 관세는 고추가 270%, 마늘 360%, 양파 135%, 생강 377.3%임.

(10) 수삼 및 홍삼·백삼 등 뿌리 삼류를 말함.

톤으로 전체 輸入量의 6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2004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輸入이 금지되면서 주로 호주산 쇠고기가 미국산을 대체하여 왔다. 韓美自由貿易協定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부과되는 40%의 關稅를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기에 단기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輸入價格이 급격히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쇠고기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호주산 등에 비해 比較優位를 갖게 될 것이다.

한국의 주요 돼지고기 輸入 對象國은 미국, 칠레, 벨기에 등이며, 輸入市場에서 2006년 美國產 占有率은 6만 1천 톤으로 29%를 차지하였다.⁽¹¹⁾ 돼지고기에 부과되는 22.5~25%의 關稅는 7년에서 10년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에 미국산 돼지고기의 輸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돼지고기 수입은 이미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어서 韓美自由貿易協定 締結로 인해 국내 돼지농가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냉동삼겹살의 경우, 미국산보다 가격이 높은 칠레나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輸入增加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닭고기는 현재 미국, 태국, 덴마크 등에서 輸入되고 있으며, 다리와 날개 부위의 輸入 比重이 높다. 輸入市場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현재 4만 톤으로 美國產 占有率은 31.6%이다. 닭고기는 현행 18%에서 30%에 이르는 關稅가 10년에서 12년에 걸쳐 철폐 되더라도 닭고기의 특성상 저장기간이 짧아 냉장육 수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家庭 消費用은 國內產 冷蔵肉을 중심으로, 業所用은 수입산 냉동육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수와 채소 분야의 경우 감귤과 포도는 季節關稅의 도입으로 인해 出荷期에는 별 변화가 없겠으나, 비수기에는 關稅引下로 價格下落이 예상된다. 사과·배·복숭아는 현재 식물방역법에 의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고, 또한 국내선호품종의 경우 10년에서 20년에 걸친 장기 關稅撤廢로 인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고추·마늘·양파 등은 미국 자체의 輸出餘力이 적어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穀物類의 경우 食用大豆·食用감자의 경우 現行 關稅를 유지하고 無關稅쿼터를 증가하기로 하였으나 무관세쿼터는 물량의 대부분을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생산액 감소는 크지 않을 전망이고, 보리의 경우도 關稅撤廢期間이 장기화되어 있어 단기적인 輸入增加 가능성은 낮다.

(11) 2002년에서 2005년까지 돼지고기 수입국의 평균 비중은 EU가 42.2%, 캐나다가 23.8%, 미국이 16.2%, 칠레가 10.3%임.

水産物の 경우 대부분의 수산물은 1997년부터 全品目 輸入自由化로 평균 18%의 낮은 關稅構造를 가지고 있어 韓美自由貿易協定 締結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냉동명태 등 민감 품목도 장기간의 관세 철폐로 인해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3. 製造業

3.1. 主要 妥結內容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商品貿易規模에서 미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輸出이 약 13.3%, 輸入이 약 10.9%이다. 미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세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서 200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對美 商品輸出은 약 432억 달러, 對美 商品輸入은 33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주요 對美 輸出品은 전자제품과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섬유, 석유화학 등으로 2006년 기준으로 電子製品는 총 수출액의 33.6%, 自動車는 26.3%, 一般機械는 10.5%, 鐵鋼은 5.4%, 纖維는 4.6%, 石油化學은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주요 對美 輸入品은 반도체, 반도체제조용 장비,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석유화학 등이며, 2006년 기준으로 半導體가 전체의 약 16.3%, 半導體製造用 裝備가 7.8%, 航空機 및 航空機 部品이 7.9%, 石油化學이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韓美自由貿易協定 상품분야에서는 양국은 상품의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 기준으로 약 94% 품목에 대해서는 3년 내의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다. <表 1>은 商品分野의 주요 協商結果를 요약하고 있다.

商品分野 협상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自動車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동차는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였는데, 그 이유는 韓美 兩國 自動車 貿易의 불균형에 있다. 2006년의 경우 한국은 미국에 69만 대(수출액 87억 불)를 수출한 반면, 미국은 한국에 겨우 5천 대(수출액 1억 불)의 完成車를 수출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한국의 관심사항은 美國 自動車 關稅의 撤廢 및 原産地의 선택적 사용이었고,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韓國의 自動車 稅制 改編이었다.

우선 自動車 부분의 關稅 亮許를 살펴보면 양국 모두 대부분 自動車品目에 대한 관세를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고,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양국이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¹²⁾ 타이어의 경우 한국은 8%의 관세는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고,

(12) 2006년 對美 부품 수입액 4억 불인 반면 對美 부품 수출액 26억 불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자동차 부품 수출대상국임.

〈表 1〉 韓美 兩國 亮許段階別 主要品目

	韓國	美國
즉시	승용차(8), 크실렌(5), 통신용광케이블(8), 항공기엔진(3), 에어백(8), 전자계측기(8), 백미러(8), 디지털프로젝션TV(8) 등	3,000cc 이하 승용차(2.5), LCD모니터(5), 캠코더(2.1), 귀금속장식품(5.5), 폴리스티렌(6.5), 컬러TV(5), 기타신발(8.5), 전구(2.6), 전기앰프(4.9) 등
3년	요소(6.5),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6.5), 치약(8), 향수(8) 등	DTV(5), 3,000cc 이상 승용차(2.5), 컬러TV(5), 골프용품(4.9), 샴들리에(3.9) 등
5년	틀루엔(5), 골프채(8), 면도기(8), 살균제(6.5), 바다가재(20) 등	타이어(4), 가죽의류(6), 폴리에테르(6.5), 스피커(4.9) 등
10년	페놀(5.5), 볼베어링(13), 콘택트렌즈(8) 등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폴리에스테르수지(6.5), 모조장신구(11), 베어링(9), 섬유건조기(3.4), 화물자동차(25) 등
10년 이상	명태(30), 민어(63), 기타 넙치(10) 고등어(10) 등	특수 신발

註: ()안은 관세율을 뜻한다.

資料: 외교부(2007).

미국은 4%의 관세를 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친환경차에 대해서 10년의 關稅撤廢期限을 확보하였고, 모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8%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3,000cc 이하의 乘用車의 關稅 2.5%는 즉시 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의 관세 2.5%는 3년 내 撤廢, 픽업트럭 등 경트럭의 경우 關稅 25%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다.

自動車 原產地 규정에 대해서는 미국이 NAFTA, 미-호주 FTA, 미-페루 FTA 등지에서 채택하고 있는 순원가법⁽¹³⁾과 한국의 전통적 계산방법인 공제법⁽¹⁴⁾과 집적법⁽¹⁵⁾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HSK 8703류 승용차의 경우 집적법으로 계산 시 역내부가가가치 35% 이상, 공제법으로 계산 시 역내부가가가치 55% 이상, 순원가법으로 계산 시 역내부가가가치 35% 이상이 발생한 경우 韓美自由貿易協定 亮許關稅率 적용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13) {역내가치포함비율 = [(순원가 - 비원산지재료가치)/순원가] × 100}으로 계산하며 순원가는 총비용에 마케팅·로얄티·운송비용 등을 제한 비용임.

(14) {역내가치포함비율 = [(제품가격 - 비원산지재료가치)/제품가격] × 100}으로 계산함.

(15) {역내가치포함비율 = (원산지재료가치/제품가격) × 100}으로 계산함.

韓國의 排氣量 기준 稅制 改編方案에 대해 합의된 사항은 韓美自由貿易協定文 제2.12조에 담겨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의 특별소비세와 지방세를 개정하는 것이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現行 稅制는 800cc 이하 배기량 차량은 면제, 800cc에서 2,000cc 사이의 배기량 차량은 차량가격의 5%, 2,000cc 초과 배기량 차량은 10%이다. 한미 양국은 이 稅制를 변경하여 協定 發效 즉시 1,000cc 이하 배기량 차량은 면제, 1,000cc 초과 2,000cc 사이의 차량은 5% 이하의 單一의 率로 과세, 2,000cc 초과 차량은 8% 이하의 單一의 率로 課稅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協定 發效日로부터 3년 이내에 1,000cc보다 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5% 이하의 單一의 率로 과세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現行 5단계로 되어 있는 自動車稅를 3단계로 개편하여 1,000cc 이하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cc당 80원 이하의 單一의 率로, 1,000cc 초과 1,600cc 사이는 cc당 140원 이하의 單一의 率로, 1,600cc 초과 배기량을 가진 차는 cc당 200원 이하의 單一의 率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自動車 公債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消費者의 公債 買入 負擔을 증가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국은 車種別 稅率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변경할 수 없다고 협정문에 규정하였다.

自動車 分爭 解決 節次는 특별히 부속서 22-가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1) 自動車 分爭의 경우 一般 分爭解決 절차보다 소요기간을 절반 이내로 단축하며, (2) 패널에서 협정 위반 등으로 심각한 교역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트럭을 제외한 승용차(HSK 8703호)에 한해 最惠國實行關稅率(미국의 경우 2.5%)로 환원이 가능하며,⁽¹⁶⁾ (3) 分爭解決 協議段階에서 관련 분쟁을 해결할 경우 관세 환원에는 이르지 않으며, 문제가 된 협정 위반 조치를 시정할 경우도 관세 환원 조치를 다시 철회한다는 것이다.

3.2. 評價

韓美自由貿易協定 締結로 인해 製造業에서는 자동차와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對美輸出 增加의 확대가 예상되지만 對美輸入增加는 일반기계제품 등 일부 품목에 그칠 전망이다. 자동차는 가장 핵심적인 對美輸出品目으로 自動車 輸出의 73% 이상을 차지하는 3,000cc 중소형차와, 타이어를 제외한 自動車部品の 美國關稅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큰 이익이 기대된다. 또한 현재는 미국이 경트럭에 대해 25%의 高關稅를 유지함에 따라 한국 트럭의 對美 輸出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트럭 關稅가 연간 2.5%씩 10년간

(16) 최혜국실행관세율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snap-back이라 지칭함.

에 걸쳐 철폐가 됨에 따라, 5년 후면 미국 관세수준이 단계적으로 市場進出시도가 가능한 12.5%로 인하되기 때문에 픽업트럭 등 高關稅 차종의 신규 미국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排氣量 기준 稅制의 조정에 따라, 약 4,000억 원 정도의 稅收 減少가 예상 이 되나, 自動車 稅負擔 경감의 이익은 결국 우리 국내기업과 소비자도 향유하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의 安全·環境 기준 등 표준 제도 변경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배출가스기준과 관련하여 그간 사용해 온 단일기준 대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기준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동차 이외의 주요 품목인 纖維製品의 경우 미국이 輸入額 기준으로 61%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기 때문에 한국제품의 美國市場 輸出擴大가 기대된다. 미국의 섬유류에 대한 關稅率은 完製品에 가까울수록 高關稅를 유지하는 경사관세구조로 單純平均關稅率은 8.9%이고, 15%에서 32%의 고관세 품목도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다.⁽¹⁷⁾ 특히 對美 전체 纖維輸出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의류분야의 加重平均 關稅는 16.4%로 추정되며, 原絲基準을 감안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 交易規模가 큰 半導體, 通信器機 등 電子製品의 경우 한국과 미국은 競爭關係라기보다는 相互補完關係이다.⁽¹⁸⁾ 또한 한미 양국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¹⁹⁾에 의거하여 無關稅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영상 및 생활가전 품목에 대해서는 2~5%의 關稅를 부과하고 있어 LCD 모니터, 디지털 TV 등 고급가전제품의 輸出 增加가 기대되는 반면, 조명·전자의료기기·계측장비 등 영세중소기업 생산제품은 미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鐵鋼製品의 경우 한미 양국 간 철강제에 대해서는 이미 無關稅가 적용되고 있지만 철광석, 합금철, 스크랩, 선철 등 원자재에 대해서는 1%에서 8%까지의 基本關稅가 적용되

(17)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2005년 말 기준으로 한국섬유제품에 대한 미국의 가중평균관세율을 13.1%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직물류의 가중평균관세율은 9.56%, 의류제품의 가중평균관세율은 16.4%로 추정.

(18) 김중기(2006)와 주대영(2006) 참조.

(19)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협정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전기통신 제품 등 IT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2007년 3월 현재 70개의 WTO 회원국이 참여).

고 있다. 韓美自由貿易協定에 따라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일부 품목에서 輸入이 증가할 수 있지만, 한국이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원자재인 스크랩의 경우 基本關稅는 1%이지만 현재 割當關稅 0%가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關稅撤廢 영향은 없다. 또한 한미 양국이 貿易救濟協議會 설치를 합의함으로써 이 協議會를 통해 철강 반덤핑 등 貿易救濟 조치의 개선이 기대된다.⁽²⁰⁾

냉장설비용 기체압축기, 광학기기 부분품, 내연기관, 기어, 볼트 등의 一般機械製品은 일본과 유럽 등 기존 수입선에 대한 價格引下 壓迫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韓美自由貿易協定 이행에 따라 사무기기, 특수목적기기 등의 제품은 美國 조달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우리제품의 경쟁력이 낮은 제품에서는 생산영세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일반기계는 우리 제품의 생산과정에 필요한 資本財이므로, 韓美自由貿易協定에 따른 輸入資本財의 가격 하락은 生産原價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그 외 化學製品의 경우 대부분 補完的 交易構造이지만 착석제·요소·톨루엔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수입 확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경우도 對美輸入 증대의 상당부분은 日本·EU로부터의 貿易轉換 效果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가죽·고무 등의 경우 10~20%의 高關稅가 철폐되어 輸出擴大가 기대되며, 특히 운동용 신발의 경우 48%의 고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큰 폭의 수출신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²¹⁾

4. 서비스업

4.1. 主要 妥結內容

韓美自由貿易協定 締結의 실질적 영향을 받는 국내 서비스산업은 法律, 會計, 稅務의 전문직서비스와 通信서비스, 放送서비스에 국한된다⁽²²⁾ 法律서비스의 경우 현재 한국은 辯護士法에 의해 大韓民國 辯護士만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원, 기타 정부기관에서의 법적 절차에 의한 代理, 대한민국 법에 관한 諮問 등 法律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한

(20) 현재 14개 철강제품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로 미국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김주한(2006) 참조].

(21)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양말의 경우 11.5%, 고무제장갑 14%, 가방·핸드백 20%, 모자·잡화 11.1% 등임.

(22) 금융서비스의 경우 추가 개방분야는 보험중개업 및 일부 보험부수 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되어 개방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민국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한민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韓美自由貿易協定 締結로 인해 한국은 (1) 협정 발효 이전에 美國 辯護士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國際公法 및 자격 취득국의 法律에 대한 諮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²³⁾ 美國 法務會社의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며, (2) 발효 후 2년 내 미국 법무회사와 한국 법무회사의 제휴를 허용하고, (3)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내에 美國 法務會社가 韓國 法務會社와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이 합작기업을 통한 대한민국 변호사의 고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會計서비스의 경우 현재 한국은 公認會計士法에 의해 公認會計士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후 韓國公認會計士會에 등록된 사람만이 會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등록된 公認會計士만이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會計法人에 출자할 수 있다. 그러나 韓美自由貿易協定 締結로 인해 한국은 (1) 협정 발효 전까지 美國法에 따라 등록된 公認會計士 혹은 會計法人이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과, 이 사무소를 통해 美國 또는 國際會計法 및 기준에 대한 會計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며, 또한 美國 公認會計士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며, (2)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내에 美國 公認會計士가 大韓民國 會計法人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한다. 단 투자대상이 되는 韓國 會計法人은 大韓民國 公認會計士가 50%가 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며, 美國 公認會計士 1인이 보유할 수 있는 韓國 會計法人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10% 미만으로 하였다. 즉, 회계서비스 개방의 내용은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만이 회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會計法人에 출자할 수 있는 現行法을 변경하여 美國 公認會計士가 國際會計法 및 基準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대한민국 회계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한 점이다.

稅務서비스의 경우 현재 한국은 稅務士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稅務士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稅務法人만이 稅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대한민국 자격의 稅務士가 아닌 경우 稅務法人 등에 투자할 수 없다. 韓美自由貿易協定 締結로 인해 한국은 (1) 협정 발효 전까지 美國法에 따라 등록된 稅務士 혹은 稅務法人이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과, 이 사무소를 통해 美國 또는 國際 稅法 및 세제에 대한 稅務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며, 또한 美國 稅務士가 大韓民國 稅務法人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며, (2)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내에 미국 세무사가 대한민국 세무법인

(23)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함.

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하였다. 단 투자대상이 되는 韓國 稅務法人은 大韓民國 稅務士가 50%가 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며, 美國 稅務士 1인이 보유할 수 있는 韓國 稅務法人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10% 미만이다. 즉, 세무서비스 개방의 내용은 회계서비스의 개방내용과 비슷하며 대한민국 세무사만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稅務法人에 출자할 수 있는 現行法을 변경하여 美國 稅務士가 國際 稅法 및 세제에 대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며, 대한민국 세무법인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한 점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한적으로 확대하여 基幹 通信事業者⁽²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수준인 49%로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KT와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해 협정 발효 2년 내 외국인의 國內法人 설립을 통한 투자제한을 전면 철폐하기로 하였다.⁽²⁵⁾

放送서비스의 경우도 한국의 지상파방송사, 위성방송사, 케이블TV방송사(SO: System Operator), 방송채널사업자(PP: Program Provider)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지만,⁽²⁶⁾ 협정 발효 3년 내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를 제외한 PP 지분에 대해 외국인이 국내법인 설립을 통해 100%까지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다.⁽²⁷⁾ 아울러, 협정 발효 후 케이블 방송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義務編成 比率을 영화 부문의 경우 현행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 부문은 현행 35%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협정 발효 후 지상파, 위성방송, SO, PP 등이 준수해야 하는 1개국 쿼터를 80%로 완화하기로 하였다.⁽²⁸⁾

(24)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을 제공하는 공급자로 일반적으로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25) 전기통신사업법 제6.2항에 따라 현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은 외국인의제법인으로 간주되어, 이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주식을 49%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

(26) 현재 외국인의 지상파방송국과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PP의 지분보유는 전면 금지되어 있고, 위성방송사에 대해서는 33%, 그리고 SO와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PP 외의 PP에 대해서는 49%의 외국인 지분제한이 있음.

(27) 방송법시행령 제14조에서는 외국인의제법인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과 달리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칭함.

(28) 현재 1개국 쿼터는 60%로 되어 있어 지상파, 위성방송, SO, PP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매 분기 전체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60%를 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함.

4.2. 評價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企業活動에 있어서 국경 간 경계가 점점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法律·會計·稅務 등의 企業支援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大型化 및 世界化의 필요성이 점점 늘고 있다. 따라서 韓美自由貿易協定 締結을 통한 이들 서비스 시장개방은 궁극적으로 이들 전문직서비스 사업자의 대형화 및 세계화를 통해 海外企業들의 韓國 進出뿐 아니라 韓國企業들의 海外進出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基幹通信事業者와 PP의 간접투자 제한 완화도 거대한 대자본이 필요한 通信事業과 PP 産業에 외국 대자본을 유인할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韓國의 通信市場을 살펴보면 이동통신시장은 SKT, KTF, 하나로텔레콤의 寡占構造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은 외국의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과 경쟁 촉진으로 국내 통신산업의 체질 강화 및 경쟁력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韓國 PP市場은 성장률이 높고 市場規模도 3조가 넘는 시장이지만, 2005년 기준 PP의 전체 사업자수는 152개로서 이 중 31.5%인 48개 사업자가 10억~50억 원의 매출액 규모이며 전체 고용인은 8,734명 정도로 영세하다. 국산 콘텐츠의 주요 需要者인 PP업체의 이런 영세성으로 인해 위험부담과 초기비용이 매우 높은 콘텐츠 製作事業이 부진하므로, 국산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도 PP의 大型化는 필요하다.

5. 綜合 評價 및 結論

이 글에서는 韓美自由貿易協定の 주요 내용을 農水産業, 製造業, 서비스업 각각에 대해 고찰하고 韓國經濟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개괄하였다. 전반적으로 韓美自由貿易協商은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맞춘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가장 관심이 큰 분야는 스크린쿼터, 쇠고기를 비롯한 農産物 市場과 自動車 市場의 개방 확대, 醫藥品·通信·放送 市場이었다.

스크린쿼터 문제는 韓美自由貿易協商 개시 전 한국정부가 국산영화상영 의무일을 73일로 축소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쇠고기 문제는 檢疫問題로 인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이 지난 5월 國際獸疫事務局(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에서 危險統制國으로 분류됨에 따라 한국은 척수 등 特定危險物質을 제외한 뼈 있는 부위에 대한 輸入禁止조치를 지속할 명분을 잃게 되었다. 自動車 市場의 경우 한국은 미국의 관심이 가장 큰 稅制의 변경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²⁹⁾

醫藥品 協商에서 한국의 약제비적정화 방안 시행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얻어낸 것은 한국의 성과지만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의약품의 知識財産權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의약품 特許期間이 사실상 연장되어 국산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약품의 지식재산권의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國內製藥産業이 현재의 영세한 구조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의 역량과 의지가 있는 제약기업 중심으로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선진화된 산업구조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通信·放送 市場에서 美國資本 참여의 길이 확대된 것도 韓國經濟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글에서 지면관계로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한미 양국의 투자에 대해 投資者-國家 間 分爭解決制度를 도입한 것도 긍정적 영향이 크다. 물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도입으로 인해 訴訟費用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국제 수준의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에 대한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先進國의 FDI가 증가할 수 있다. 선진 FDI의 유입은 경쟁의 촉진과 함께 기술이전 효과를 수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도입은 한국 제도의 선진화와 투명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구체적 관심분야로는 自動車, 纖維, 貿易救濟, 개성공단, 人力移動 분야를 들 수 있다. 貿易救濟分野에서는 반덤핑분야에서 제로잉 금지 등 한국의 요구가 수용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반덤핑과 상계조치관련 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와 협의를 의무화하였고, 貿易救濟委員會를 설치하여 양국 간 貿易救濟措置에 대한 협의를 강화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韓半島 域外加工地域委員會를 설치하여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美國議會의 동의를 거쳐야 하긴 하지만 特惠關稅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은 성과라 할 수 있다. 人力移動의 경우도 美國協商團이 비자와 관련한 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어 韓美自由貿易協商에서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협정 타결 이후 미국 행정부가 인력이동의 자유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韓美自由貿易協商에서 아쉬운 점은 협상 초기부터 쌀의 배제를 公論化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쌀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생각할 때, 政治的으로 쌀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經濟的 側面만 살펴볼 때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협상에 쌀을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에서는 힐러리 등 민주당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자동차분야에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 내용적으로 다시 협상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임[Schott(2007) 참조].

포함하였더라도 無關稅TRQ 양을 좀 더 늘리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을 것이다.⁽³⁰⁾ 한국은 쌀의 배제를 협상 초기부터 요구하였고 결국 관철은 시켰다. 그러나 쌀을 협상의제에 포함하였어도 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없었으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쌀 배제로 인한 협상력의 약화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부문별로 韓美自由貿易協定 締結의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農産物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쇠고기의 경우 장기적인 價格 下落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消費者 厚生 側面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쇠고기 關稅의 감축으로 국내 쇠고기 사육기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이 주장도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쿼터물량에 의해 輸入이 되던 한국 쇠고기시장은 2001년에 關稅化로 개방이 되었다. 이 당시 축산농가와 농민단체들은 쇠고기 輸入擴大로 인해 쇠고기 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사육기반이 붕괴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2001년 이후 쇠고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축산농가소득과 戶當 飼育頭數가 증가하였으며, 우려했던 사육기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³¹⁾ 쇠고기 시장의 개방 확대 후 도리어 쇠고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쇠고기 需要의 增大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방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붕괴된다고 하는 주장은 이런 需要增大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畜産業은 한국처럼 국토면적이 크지 않은 나라에서 크게 육성할 성질의 산업은 아니다. 따라서 한우의 경우 生産의 大規模化를 목표로 하지 말고, 小規模·高品質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즉, 국내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高品質과 食品安全이 확보된 한우는 보다 높은 가격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 따라서 한우의 경우 브랜드화를 촉진하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정부도 한우의 流通構造를 투명하게 하여 消費者에게 한우와 輸入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韓美自由貿易協定 締結로 인해 農水産 部門의 일부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國內 農業도 그동안 開放化의 과정을 겪으며 競爭力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의 결과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농업기반의 붕괴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한 農家所得 減少에 대해서는 소득보전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또 高齡農 등에 대한 農漁村 복지대책 수립 등의 확실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農水産業의 企業化가 진행이 되어 이 분야에서

(30) 이 점에 대해서는 Schott(2007)도 동의하고 있음.

(31) 박지현(2004) 참조.

自生力を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自動車 部門의 이익에 대해 美國關稅인 2.5%의 關稅撤廢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연간 新車需要는 연간 1,700만 대로 한국의 16배에 달하고, 美國市場에서 현대자동차의 營業利益率이 5%대, 기아자동차의 營業이익률이 0.5%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2.5%의 關稅撤廢는 對美輸出增大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경우 파급효과가 크고 고용창출효과도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自動車輸出의 증대는 韓國經濟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자동차 시장의 거의 獨占市場임을 감안할 때, 미국과 EU와의 自由貿易協定를 통한 자동차 시장의 경쟁 확대는 궁극적으로 韓國自動車 産業의 체질강화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현지생산 확대 및 미국시장 판매 확대에 따른 부품 수출 증가는 國內 部品 産業의 大型化와 專門化를 가져와 일본과 독일 등 경쟁국에 대한 우리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自動車 分爭에서 snap-back 조항의 경우 문제가 된 협정 위반 조치를 시정할 경우 關稅 還元 措置가 다시 철회되기는 하지만, 향후 自動車 通商分爭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纖維製品의 경우도 한국 섬유산업의 世界市場 占有率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對美輸出도 2001년 32억 불 규모에서 2006년 20억 불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韓美自由貿易協定을 통해 輸出增大 및 雇傭增大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원사, 직물, 의류 등 전 섬유산업이 고루 발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엄격한 原絲 基準의 적용으로 약간의 원가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산 원사사용은 국내 원사제품의 발전을 가져오고, 이는 궁극적으로 對美 纖維輸出品目的 高附加價值化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 迂回 輸出防止를 위해 한국이 제공하는 원산지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미국정부가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였고, 사전 통보없이 실시하는 것도 韓國 關稅法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국 세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의 경우 韓美自由貿易協定 체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부문은 法律, 會計, 稅務, 通信, 放送 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통신, 방송서비스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시장과 경쟁의 확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또 이들 서비스시장의 경우 IRS(Increasing Return to Scale)의 특징이 있으므로 自然 獨占의 위험이 항상 내재하고 있기에 國內市場에서 獨占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개방을 통해 국내시장에 경쟁요인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의 한국 진출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韓美自由貿易協定 미개방 분야에서도 경쟁력 강화 노력이 지속적인 과

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의 급증을 통해 내국인이 해외 선진국의 서비스 산업을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教育 및 醫療 分野에서는 외국의 서비스를 직접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製造業 등 국내의 여타산업에 비하여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국가 간 비교에서도 가장 뒤떨어진 분야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서비스산업의 競爭力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난 40여 년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輸出主導形 經濟發展戰略을 채택하여, 製造業 發展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世界化의 급격한 진전으로 인해 제조업의 단순생산공정이 임금이 싼 後發開途國에 이전되면서 국내의 저임금에 기초한 工產品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이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産業構造는 IT, 부품·소재 등 高附加價値 製造業과 金融, 通信 및 知識基盤서비스 등 高附加價値 서비스업이 주가 되는 구조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國民所得 3만 불 시대이며 이것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평균소득이 연 1억 2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産業構造는 이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여야 한다.

韓美自由貿易協定 체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업종은 일부 업종에 제한되어 있지만 제조업을 포함한 FDI 확대를 통한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한국 서비스산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運輸, 通信, 金融 등 製造業의 中間財로 역할을 하는 서비스의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製造業 生産 增加로 야기되는 需要의 增加로 육성이 기대된다. 또한 韓美自由貿易協定은 한국시장을 미국시장에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미국뿐 아니라 미국시장을 겨냥한 域外 國家로부터 FDI 유입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런 FDI 유입확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간접적 영향으로 知識基盤서비스의 수요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을 가져올 수 있다. 結論的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은 韓國 經濟構造의 高度化와 新成長動力 확보 및 知識基盤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과제는 기업들의 몫이다.

對外經濟政策研究院 貿易投資政策室 副研究委員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02)3460-1073

팩스: (02)3460-1233

E-mail: ysong@kiep.go.kr

參 考 文 獻

- 김중기(2006):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통신기기산업,” 산업연구원.
- 김주환(2006):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철강산업,” 산업연구원.
- 박지현(2004):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쇠고기시장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외교부(2007):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4월 4일 보도자료.
- 주대영(2006):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전자부품산업,” 산업연구원.
- Schott, J. J.(2007):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 Summary Assessment,”
Policy Briefs in International Economics PB07-7 (Augus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 Schott, J. J., S. C. Bradford, and T. Moll(2006): “Negotiating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Policy Briefs in International Economics PB06-4 (Jun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